

2022.06.30.

2023년 최저임금 안내

2023년 최저임금 안내

- 시간급 최저임금 : **9,620원** (2022년 대비 5.02%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원)	인상률(%)
2018	7,2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87
2021	8,720	1.5
2022	9,160	5.1
2023	9,620	5.02

- 결정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 제1항)

최저임금 계산 예시

■최저임금 산정례 : 월급제 근로자

➢ 월~금(주5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2,010,580원(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1,809,522원(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수습근로자에게는 3개월 동안 90%)

■최저임금 산정례 : 시급제 근로자

➢ 최저임금 9,620원에 일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

➢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경우 최저시급 : **11,554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과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달라집니다.

연도	복리후생적 임금	정기상여금
2020년	5%	20%
2021년	3%	15%
2022년	2%	10%
2023년	1%	5%
2024년 이후	0%	0%

-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의 **1%와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
- 복리후생적 금품은 각 항목별이 아닌 합계액 기준의 1% (식대, 간식비, 식비보조금, 통근비, 기숙사 수당, 교통보조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2023년 계산 예시

➤ ①복리후생 성질을 지닌 금품 (최저임금의 1%)

$$2,010,580 \times 1\% = 20,105\text{원 초과분 산입}$$

➤ ②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의 5%)

$$2,010,580 \times 5\% = 100,529\text{원 초과분 산입}$$

➤ 예시 1

	기본급	식대	상여금 (매월지급)	총액
실 지급액	1,900,000원	100,000원	100,000원	2,200,000원
최저임금 산입	1,900,000원	79,895원	0원	1,979,895원

예시1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임금은 1,979,895원으로 209로 나누면 시급 9,473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2023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기본급 수준을 인상하거나(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하거나), 보전수당(최소 월 30,68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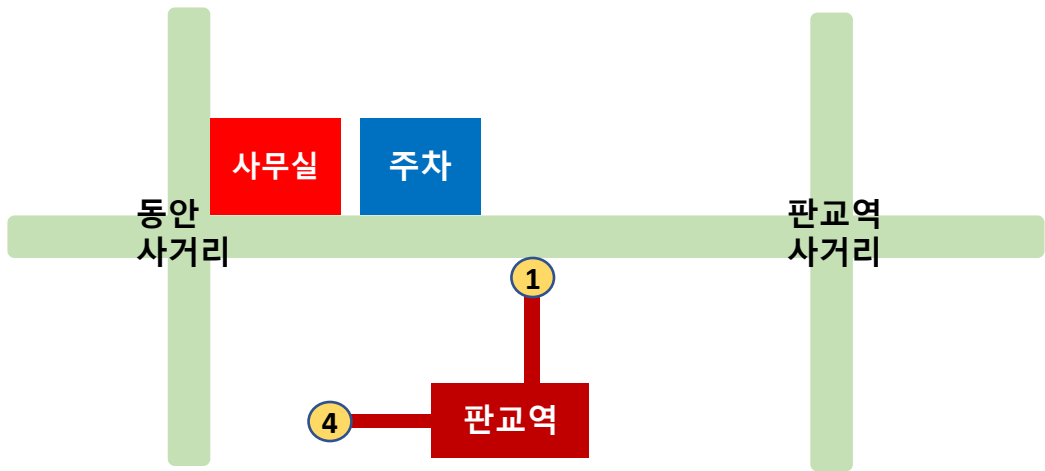
➤ 예시 2

	기본급	식대	상여금 (매월지급)	총액
실 지급액	2,000,000원	100,000원	0원	2,200,000원
최저임금 산입	2,000,000원	79,895원	0원	2,079,895원

예시2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임금은 2,079,895원으로 최저임금법 준수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효과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안형근 공인노무사
cpla_ahg63@naver.com